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제1931호

다. 제출일자: 2024.5.27.

라. 회부일자: 2024.5.30.

2. 제안사유

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조정 및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2024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은 1차 운용계획 변경 심의로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정책사업비 510억 7백만원에서 527억 9백만원으로 17억 2백만원 증액, 예치금 204억 4천7백만원에서 187억 4천5백만원으로 17억 2백만원 감액한 바 있음(20% 미만 변경).

나. 2023회계연도 결산으로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404억 1천6백만원에서 476억 4천3백만원으로 72억 2천7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이 187억 4천5백만원에서 259억 7천2백만원으로 72억 2천7백만원 증액됨(20% 초과 변경).

다. 지출계획 정책사업비를 527억 9백만원, 예치금을 259억 7천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계획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계 (순수입)	71,464 (19,048)	78,691 (19,048)	7,227 (-)
예치금 회수	40,416	47,643	7,227
예탁금 원금회수	12,000	12,000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2,374	12,374	-
이자수입	2,055	2,055	-
기타수입	3,169	3,169	-
전입금	1,450	1,450	-

마. 지출계획 변경내용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초(A)	1차 변경	2차 변경(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71,464	71,464	78,691	7,227(10.1%)
(순 지 출)	(51,017)	(52,719)	(52,719)	1,702 (3.3%)
일반예산(재무활동)	20,447	18,745	25,972	5,525(27.0%)
보전지출	20,447	18,745	25,972	5,525(27.0%)
여유자금 예치	20,447	18,745	25,972	5,525(27.0%)
기후변화 대응 강화	51,007	52,709		1,702 (3.3%)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51,007	52,709		1,702 (3.3%)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1,000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1,200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30,734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1,570			-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006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50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6			-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250			-
주민DR 서비스 확대사업	242			-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사업	11,014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25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2.7			-
지열 운영비 시범 지원사업	50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957	2,047		90 (4.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290		290 (100%)
저탄소건물 인증제도 시행		100		100 (100%)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150		150 (100%)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 설치 운영		90		90 (100%)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252		252 (100%)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500		500 (100%)
음식물쓰레기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230		230 (100%)
행정운영경비	10			-
기본경비	10			-
기금관리비	10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¹⁾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변경안은 1차 운용계획 변경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예치금을 당초(204억 4천 7백만원) 대비 27%(55억 2천5백만원) 증액된 259억 7천2백만원으로, 정책사업비를 당초(510억 7백만원) 대비 3.3%(17억 2백만원) 증액된 527억 9백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변경안(1,2차) 세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초(A)	1차 변경	2차 변경(B)	증감(B-A) (비율)
합 계	71,464	71,464	78,691	7,227(10.1%)
(순 지출)	(51,017)	(52,719)	(52,719)	1,702 (3.3%)
일반예산(재무활동)	20,447	18,745	25,972	5,525(27.0%)
보전지출	20,447	18,745	25,972	5,525(27.0%)
여유자금 예치	20,447	18,745	25,972	5,525(27.0%)
기후변화 대응 강화	51,007	52,709		1,702 (3.3%)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51,007	52,709		1,702 (3.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957	2,047		90 (4.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290		290 (100%)
저탄소건물 인증제도 시행		100		100 (100%)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150		150 (100%)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 설치 운영		90		90 (100%)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252		252 (100%)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500		500 (100%)
음식물쓰레기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230		230 (100%)
행정운영경비	10			-
기본경비	10			-
기금관리비	10			-

1)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나. 검토의견

-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²⁾에 따르면 20% 초과 여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2024년 기후대응기금은 2차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1차 변경(3월 19일)은 정책사업비 510억 7백만원 중 3.3%인 17억 2백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04억 4천7백만원 중 8.3%인 17억 2백만원을 감액하여 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었음.

2차 변경(5월 23일)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재무활동비)을 259억 7천 2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증액 규모가 당초(204억 4천7백만원) 대비 20%를 초과함에 따라 1차 변경을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임.

예치금 변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전년도 결산 전(3월)에 이루어진 1차 변경에서 신규사업을 대거(총 8건 중 7건) 편성한 것은 시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바,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 '23.7.28. 시행 p.296~297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상반기에 자주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제1차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변경 주요 사업〉

연번	사업명	금액(백만원)		사업내용	주관부서
		기존	변경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957	2,04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강화(배출량 산정·검증, 정부 할당 대응, 상쇄배출권 확보 등)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 비용 절감	기후환경 정책과
2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신규	290	기후테크 최신 동향 공유 및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기술전시, 투자상담 등 지원	
3	저탄소건물 인증제도 시행	신규	100	민간건물 신고·등급제 자율참여 유도 및 저탄소건물 확산	친환경 건물과
4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신규	150	서울시 아파트 단지 및 주상복합단지 대상으로, 에너지(전기·수도) 절감 및 친환경 활동 실천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발·시상	녹색 에너지과
5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 설치 운영	신규	90	폐원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 집하장 구축	
6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신규	252	재활용품 분리배출장 미설치 또는 팝업형 운영 공동주택에 신규 설치 공사 비용 지원	자원 순환과
7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신규	500	자치구 커피박 수거·재활용 처리비용 지원	
8	음식물쓰레기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신규	230	시민 자발적인 음식폐기물 감량 활동 지원을 위한 감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시스템 구축	생활 환경과